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재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내용
---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공동사업 (일반형)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 (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조합 1곳당 국비 최대 300백만원 이하 * 단계별 상이	■ 국비 : 70~80% 이하 ■ 자부담 : 20~30% 이상
공동사업 (기업가형)	- 협동조합이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 등을 지원 * 창작자 / 스타트업 / 이(異)업종 협동조합 등 ** 공동장비, BM발굴, 판로 및 투자연계 지원	조합 1곳당 국비 최대 300백만원 이하 * 최대 2년	■ 국비 : 70~80% 이하 ■ 자부담 : 20~30% 이상
공동사업 (지역기반형)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 (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 조합 자체 상권활성화 활동 추가지원	조합 1곳당 국비 최대 100백만원 이하	■ 국비 : 80% 이하 ■ 자부담 : 20%이상
판로지원 (온라인)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 기초체력 향상, 해외수출 지원 등 소상공인협동조합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조합 1곳당 6개 플랫폼 입점	■ 선정일 이후 3개월 이내 온라인 플랫폼 1개사 이상 입점 및 상품등록 완료
판로지원 (오프라인)	박람회 입점지원, 바이어 유통상담회, 해외진출 지원 등 조합 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	조합 1곳당 최대 4회 박람회 참가	■ 전문기관 주관 교육(온·오프라인) 1회이상 참석

□ 지원 대상

- 공동사업 :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 판로지원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23년)**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 각 사업별 자격요건 상세 내용 확인 필수

□ 우대지원

구 분	우대사항 세부내용
청년	이사가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 (공고일('24.5.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4.5.2일 이후 출생자))
여성	이사가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장애인	이사가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조합(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백년소상공인	'백년소상공인'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클러스터 스마트공방	조합 또는 조합원이 클러스터 스마트공방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기업가형 소상공인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우리동네 클라우드 펀딩

*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선정심의 시 가점부여(최대5점)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 협동조합(협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협업체) 및 조합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2)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 ▶ '20년 이후(포함)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및 판로지원 사업을 5회(사업별) 지원받은 협동조합(협업체)
- ▶ '22년~'23년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중도포기이력이 있는 협동조합(판로지원사업만 해당)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mss.go.kr> (로그인 필요)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 5. 1.(수), 10:00 ~ 5. 14.(화), 18:00

* 18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별도 안내]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증빙서류 원본은 협약체결 시 "[참고4] 관할센터"에 제출(선정되지 않은 조합은 미제출)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발급처 등)는 [참고5, 참고6] 참조

③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유의 사항** : 사업 신청 시 조합(협업체)은 아래 내용의 유의 필요

- 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이 필요
-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음
- ③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④ 협업활성화사업은 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과의 내부거래(재화, 서비스 등 구입) 불가
- ⑤ 同 사업 선정 시, 선정조합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협동조합에게 책임이 있음
- ⑦ '기업가형' 분야의 경우 반드시 타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서류심사 가능

□ **의무 사항** : 사업 선정된 조합(협업체)은 아래 사항의 이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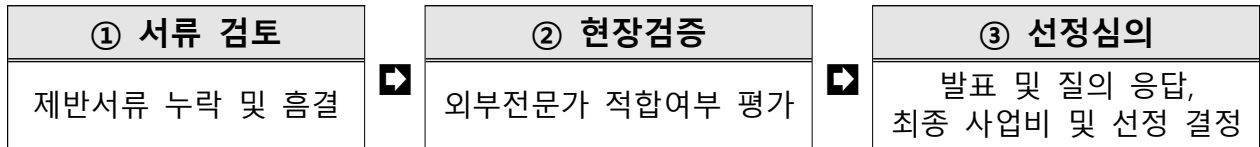
- ① 사업비 집행 시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필수 이용해야하며 미 사용 시 사업추진 불가
- ② 선정 통보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사업 담당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5h)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함
- ③ 선정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공단 방침과는 무관)
- ④ 총 사업비*의 20%(장비 30%) 이상 "자부담금"과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총 VAT(10%)", "IOT 장비(자부담 30%, 10만원 내외)"는 협동조합 부담
* 지원조합은 지원조합 명의로 사업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후 협약 체결, 자부담금 미입금 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⑤ 공단의 요청자료* 제공 및 전산시스템에 정보입력을 해야 하며, 미이행 시 협약사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공단에서 요청하는 조합현황 정보, 2)재무정보 등 현황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연1회)
- ⑥ '24년도에 지원받은 조합은 익년 실시되는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에 응하여야함
* 불응시 공동일반 사업참여제한(최대 3년), 공동일반(5년간 조사) 사업참여제한(최대 5년)
- ⑦ (온라인 판로)사업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최소 1개사 내 입점 및 상품등록 해야 하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시 사업 중도포기로 간주
- ⑧ (오프라인 판로) 박람회 참가하는 조합은 박람회 지각, 무단불참, 운영인력2명 미상주, 등 불성실한 참여태도를 지양해야 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해야 함.
- ⑨ (판로지원) 선정 통보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사업 담당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온·오프라인)을 1회 이상 참여해야 함.

5

평가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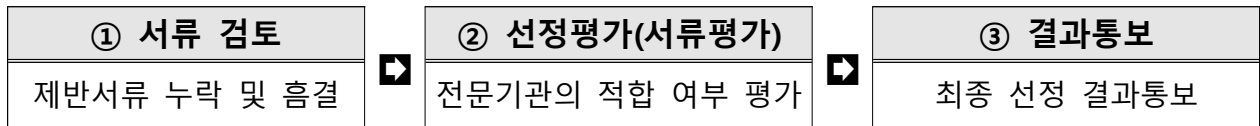
□ 평가 절차 : 총 2~3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 (공동사업)



* 공동장비(3단계 : 서류→현장→선정심의), 공동일반(2단계 : 서류 → 선정심의)

○ (판로지원)



6

문의처

□ 문의처

사업유형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공동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 7926, 7927
(일반형)			
(지역기반형)			042-363-7922
(기업가형)			042-363-7926
판로지원			042-363-7928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목 차

1.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6
2.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온라인)	13
3.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오프라인)	18
4. 협업활성화 사업 참고자료	23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이익 창출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조합원) 등의 경쟁력 제고
- ☐ **사업기간** : '24. 1월 ~ 11월
-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기간** : '24. 5. 1.(수), 10:00 ~ 5. 14.(화), 18:00
 * 18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미접수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 ☐ **지원대상** :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 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4)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협회 및 단체, 예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된 협회 등)
- ☐ **지원분야** :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 ☐ **지원한도** :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구 분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 비율)
성장단계	1억원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도약단계	3억원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지역기반	1억원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80% 이내)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국비 총액 기준

** 지원금 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IoT 단말기 설치 등)은 협동조합(협업체) 부담

2

지원분야(내용) 및 요건

□ **지원분야** : 성장단계, 도약단계(기업가형 포함), 지역기반

구 분	지 원 요 건		선정 규모(안)*
	지원액	지원기간	
성장단계 지원	최대 1억원	1년	3개 내외
도약단계 지원	최대 3억원	1년	5개 내외
기업가형 지원	최대 5억원	2년(1+1)*	2개 내외
지역기반형 지원	최대 1억원	1년	9개 내외

* (기업가형 지원) : 1차년도 지원 이후 중간평가 진행,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여부 결정

** 최종 지원금액과 선정 규모는 선정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공동장비	•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 제외) ** 협동조합(협업체) 명의면서 정부지원에 적합 장소에 설치
공동일반	개발¹⁾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마케팅²⁾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규모화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프랜차이즈³⁾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참고1]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상권활성화⁴⁾ •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활성화 활동

1) 개발 분야의 비즈니스모델(BM) 개발의 경우, '기업가형 지원' 사업에 한함

2)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4년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과 중복지원 불가

3)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4) 상권활성화 분야의 경우, '지역기반형 지원'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지역기반형의 경우 상권활성화 분야 30% 이상, 공동장비 분야 50% 이하로 사업비 편성

- **신청요건** :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면서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기준으로 단계별 신청

구 분	신청요건
(공통조건)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최소 5인 이상) *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공동장비 신청 조합은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필수(자부담 30%, 10만원 내외)
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② 조합의 '22년 대비 '23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20% 미만 * 전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 '23년 이후 설립 조합(협업체)는 가능
도약단계 (①, ②번 中 택1)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② 조합의 '22년 대비 '23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 * 전국단위 사업을 영위하는 협업체의 경우 '성장단계'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기업가형	① 도약 단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 중 ② 확실한 BM을 갖춘 협동조합+¹⁾창작자, ²⁾스타트업, ³⁾이업종협동조합 등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 외부 투자 기관과 연계 과제 지원 * 1차년도 공동장비, BM발굴(3억) + 2차년도 판로 및 투자 연계(2억) * 1차년도 지원 이후 성과평가 진행,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여부 결정
지역기반형	① 성장 단계의 요건을 충족(도약단계 충족 시에도 가능)하는 협동조합 중 ② 지역 가치를 실현하고 상권의 주체로써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조직된 협동조합) * 지역상권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공통조건 미충족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원 참여 시에도 신청가능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2)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20년 이후(포함)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5회 지원받은 협동조합(협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우대사항** : 조합 또는 조합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심의 시 가점

구 분	우대사항 세부내용
청년	이사가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 (공고일('24.5.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4.5.2일 이후 출생자))
여성	이사가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장애인	이사가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조합(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백년소상공인	'백년소상공인'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클러스터 스마트공방	조합 또는 조합원이 클러스터 스마트공방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기업가형 소상공인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우리동네 클라우드 펀딩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 5. 1.(수), 10:00 ~ 5. 14.(화), 18:00

* 18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미접수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별도 안내]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협업체 대표)이 로그인*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증빙서류 원본은 협약체결 시 "[참고4] 관할센터"에 제출(선정되지 않은 조합은 미제출)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발급처 등)는 [참고5, 참고6] 참조

③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4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3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① 서류 검토	② 현장검증	③ 선정심의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외부전문가 적합 여부 평가	발표 및 질의 응답 최종 사업비 및 선정 결정

* 공동장비(3단계 : 서류→현장→선정심의), 공동일반(2단계 : 서류 → 선정심의)

□ **평가 방법**

① **(서류검토)** 사업계획,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여부 등 검토

- 조합(협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 서류검토 후 처리방법 >

구분	처리조건	후속조치
접수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현장평가 등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보완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보완을 목적으로 기 제출한 서류 등을 재제출하는 경우 즉각 반려 처리 될 수 있음	- 보완사항 안내 * 보완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미 보완시 탈락. 단, 부득이한 경우 보완기한(3일 이내)을 연장할 수 있음
반려	-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반려(탈락)사항 안내

② **(현장확인)** 공동장비 신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현장(적합여부) 평가

* 공동장비 설치 장소, 공동장비 필요성 등 평가 후 '적합'인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진행

③ **(선정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고 대면(발표) 및 질의 응답 진행

- **(심의내용)** BM, 조합역량, 사업지속성, 협동조합의 가치확립 등 평가하고 지원 조합 선정 및 지원 금액 확정 등 최종 심의

④ **(결과통보)** 홈페이지 신청 결과 확인 및 조합으로 개별 통보

□ 향후 추진 일정

- 서류검토 '24.5.16(목) ~ '24.5.29(수)
- 현장검증(공동장비 신청 조합) '24.5.30(목) ~ '24.6.13(목)
- 발표평가 및 심의위원회 '24.6.17(월) ~ '24.6.20(목)
- 지원대상 최종선정 '24.6.17(월)
- 역량강화교육 '24.6.20(목)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24.6.21(금) ~ '24.11.30(토)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 및 의무사항

□ 유의 사항 : 사업 신청시 조합(협업체)은 아래 내용의 유의 필요

유의사항

- 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이 필요
-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음
- ③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④ 협업활성화사업은 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과의 내부거래(재화, 서비스 등 구입) 불가
- ⑤ 同 사업 선정 시, 선정조합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협동조합에게 책임이 있음
- ⑦ '기업가형' 분야의 경우 반드시 타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서류심사가 가능함

□ **의무 사항** : 사업 선정된 조합(협업체)은 아래 사항의 이행 필요

의무사항

- ① 사업비 집행 시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필수 이용해야하며, 미 사용 시 사업추진 불가
- ② 선정 통보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사업 담당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5h)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함
- ③ 선정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공단 방침과는 무관)
- ④ 총 사업비*의 20%(장비 30%) 이상 **"자부담금"**과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총 VAT(10%)", "IoT 장비(자부담 30%, 10만원 내외)"**는 협동조합 부담
 - * 지원조합은 지원조합 명의의 사업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후 협약 체결, 자부담금 미입금 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⑤ 공단의 요청자료* 제공 및 전산시스템에 정보입력을 해야 하며, 미이행 시 협약사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¹⁾공단에서 요청하는 조합현황 정보, ²⁾재무정보 등 현황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연1회)
- ⑥ '24년도에 지원받은 조합은 익년 실시되는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에 응하여야함
 - * 불응시 공동일반 사업참여제한(최대 3년), 공동일반(5년간 조사) 사업참여제한(최대 5년)

6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 7926, 7927

※ 제출서류

(서식) 1.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2.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참여확약서

2. 공동사업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기획전 개최 및 입점지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 판로교육 등을 통한 매출증대로 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
- ☐ **사업기간** : '24. 3월 ~ 12월
- ☐ **사업규모** : 30개 조합 내외
-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기간** : '24. 5. 1.(수), 10:00 ~ '24. 5. 14.(화), 18:00
* 18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미접수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23년)을 1회 이상 지원 받은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 14 페이지 신청자격 요건 확인 필수

2

지원내용 및 요건

- ☐ **지원내용** : 온라인 유통플랫폼 전용 기획전 입점, 기초체력, 해외 수출 지원 등 소상공인협동조합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구 분	세부내용	
(필수)	선정 이후 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유통플랫폼 최소 1개 이상 입점 및 상품등록 * 등록기한 : 선정일 기준 3개월 이내	
기초체력	판로교육	마케팅기법, 판매전략교육 등 온라인 판매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진행
	MD상담회	업체 또는 품목별 맞춤형 MD상담회 진행
	기초체력	상세페이지 제작, 브랜딩, 마케팅, 홍보영상 제작 중 1개 선택지원

국내 온라인 판로 확대	온라인 유통플랫폼	① 국내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 내 전용 기획전 개최 및 입점지원 ② 전용 기획전 내 쿠폰지원을 통한 소비자 구매 촉진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진행 및 연계 특별 기획전 진행 * 사업 참여 조합 중 우수조합(매출, 후기,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지원
해외수출	해외 온라인 유통플랫폼	① 해외 온라인 유통플랫폼 내 전용 기획전 개최 및 입점지원 ② 전용 기획전 내 쿠폰지원을 통한 소비자 구매 촉진
	해외 수출 준비지원	해외 온라인 판매를 위한 영문 상세페이지 제작 등 수출 준비 지원

* 기초체력(브랜딩, 마케팅)은 '24년 공동사업(브랜드, 마케팅)과 중복 지원 불가

** 국내 온라인 플랫폼(안) : **11번가**, 쿠팡, 위메프, 지마켓, 옥션, 티몬, 우체국 쇼핑 등 7곳

*** 해외 온라인 플랫폼(안) : **쇼피**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요건**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23년)을 1회 이상 지원 받은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자격요건]

구 분	구성요건
공통조건	- 전체 조합원(5인이상)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유하거나 발급예정인 협동조합 및 협업체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예정인 경우, 선정일기준 1개월 이내 보완제출 필수
자격요건 (④,②번 中 택1)	① (매출액) 전년도(2023년) 매출 1천만원 이상 ② (매출증가) 전년대비('22년 대비 '23년) 매출액 증가율이 5%이상 * 전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 '23년 신규 설립 협·단체는 신청 가능

* 선정일 기준 1개월 내 통신판매업 신고증 미제출시, 사업 중도포기로 간주하며 중도포기 시 당해 연도 포함 향후 2년간 사업 참여 불가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2)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 '20년 이후(포함)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5회 지원 받은 조합(**사업 졸업제**)
-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제재(사업참여제한) 기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22년~'23년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중도포기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 5. 1.(수), 10:00 ~ 5. 14.(화), 18:00

* 18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미접수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별도 안내]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발급처 등)는 "[참고5] 제출서류 발급처", "[참고6] NICE 원클릭서비스 이용방법" 참조

③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4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서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① 서류 검토	② 선정평가(서류평가)	③ 결과통보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전문기관의 적합 여부 평가	최종 선정 결과통보

□ **평가 방법**

- ① (서류검토) 사업계획,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여부 등 검토
- 조합(협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 서류검토 후 처리방법 >

구분	처리조건	후속조치
접수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선정평가 등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보완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보완을 목적으로 기 제출한 서류 등을 재제출하는 경우 즉각 반려 처리 될 수 있음	- 보완사항 안내 * 보완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 미 보완시 탈락. 단, 부득이한 경우 보완기한(3일 이내)을 연장할 수 있음
반려	-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반려(탈락)사항 안내

- ② (선정평가) 전문기관에서 신청 협동조합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심의회(선정평가) 진행

- 평가항목 :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시장성, 가격경쟁력 등

- ③ (결과통보) 홈페이지 신청 결과 확인 및 전문기관 이메일 개별 통보

□ **향후 추진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가 모집공고												
지원조합 선정												
사업진행												
사업완료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 및 의무사항

□ **유의 사항** : 사업 신청 시 아래 유의사항 필독

유의사항

- 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이 필요
- ②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혹은 전문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하며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될 수 있음
-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협동조합에게 책임이 있음
- ④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유의
- ⑤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연도 포함 향후 2년간(~'26년) 사업 지원 불가
- ⑥ 同 사업 선정 시, 선정조합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 ⑦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신청,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조치 및 민·형사소송 가능

□ **의무 사항** : 사업 선정된 조합은 아래 의무사항 이행 필요

의무사항

- ① 사업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최소 1개사 내 입점 및 상품등록 해야 하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시 사업 중도포기로 간주
- ② 선정 통보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사업 담당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함
- ③ '24년도에 지원받은 조합은 익년 실시되는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조합은 추후 공단 요청 시, 협동조합 현황정보 제공 의무 있음.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음

6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8

※ 제출서류

- (서식) 1. 2024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온라인)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2024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온라인) 참여확약서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유명박람회 입점 지원, 유통상담회, O2O 연계지원 등 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협동조합 자립발판 마련 및 유통활로 모색
- ☐ **사업기간** : '24. 3월 ~ 12월
- ☐ **사업규모** : 20개 조합 내외
-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기간** : '24. 5. 1.(수), 10:00 ~ '24. 5. 14.(화), 18:00
 * 18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미접수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23년)을 1회 이상 지원 받은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 19 페이지 신청 자격요건 확인 필수

2

지원내용 및 요건

- ☐ **지원내용** : 박람회 입점지원, 바이어 유통상담회, 해외진출 지원 등 소상공인협동조합 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

구 분	세부내용	
(필수)	선정이후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박람회 관련교육(온/오프라인) 최소 1회 참여	
박람회 참가지원	박람회 관련 교육	박람회 참여 관련 선행교육 및 판로교육 진행
	박람회 입점 지원	- 국내 유명박람회 입점 지원 및 관련 운영 비용지원 * 운영비용 : 숙박 및 식비, 부대시설 사용비 등 일부 - 디렉토리북 제작 및 배포 - 박람회 기간 내 홍보 및 프로모션 행사 진행

박람회 참가지원	족자봉 제작	상품 및 협동조합 홍보용 족자봉 제작 지원 * 박람회 입점지원 참여시 지원 가능
	부스 디스플레이 컨설팅	전문 비주얼디렉터의 부스 디스플레이(상품진열, 부스컨셉 등) 컨설팅 * 단체 공동관 참여시 지원 가능
판로확대 지원	바이어 유통상담회	상품 품평회 및 국내 유명 MD와 1:1 매칭 프로그램 운영
	O2O연계	박람회 연계 협동조합 전용 온라인 기획전 운영 및 쿠폰지원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	해외 바이어 상담회, 해외 수출지원 연계(번역 지원, 컨설팅 등)

- * 족자봉 제작 및 부스디스플레이 컨설팅은 해당항목 '23년도 지원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지원제외
 ** '24년도 공동사업(마케팅_박람회 참가)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요건**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23년)을 1회 이상 지원 받은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구 분	구성요건
공통조건	전체 조합원(5인이상)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자격요건 (①,②번 中 택1)	① (매출액) 전년도(2023년) 매출 1천만원 이상 ② (매출증가) 전년대비('22년 대비 '23년) 매출액 증가율이 5%이상 * 전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 '23년 신규 설립 협·단체는 신청 가능

* '24년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일반(마케팅_박람회 분야) 중복지원 불가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2)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 ▶ '20년 이후(포함)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5회 지원 받은 조합(사업 졸업제)
-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제재(사업참여제한) 기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22년~'23년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중도포기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 5. 1.(수), 10:00 ~ 5. 14.(화), 18:00

* 18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미접수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별도 안내]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발급처 등)는 "[참고5] 제출서류 발급처", "[참고6] NICE 원클릭서비스 이용방법" 참조

③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4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서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① 서류 검토	② 선정평가(서류평가)	③ 결과통보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전문기관의 적합 여부 평가	최종 결과 통보 및 후속안내

□ **평가 방법**

- ① (서류검토) 사업계획,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여부 등 검토
- 조합(협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 서류검토 후 처리방법 >

구분	처리조건	후속조치
접수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선정평가 등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보완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보완을 목적으로 기 제출한 서류 등을 재제출하는 경우 즉각 반려 처리 될 수 있음	- 보완사항 안내 * 보완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 미 보완시 탈락. 단, 부득이한 경우 보완기한(3일 이내)을 연장할 수 있음
반려	-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반려(탈락)사항 안내

- ② (선정평가) 전문기관에서 신청 협동조합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심의회(선정평가) 진행

- 평가항목 :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시장성, 가격경쟁력 등

- ③ (결과통보) 홈페이지 신청 결과 확인 및 전문기관 이메일 개별 통보

□ **향후 추진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가 모집공고												
지원조합 선정												
사업진행												
사업완료												

*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 및 의무사항

□ **유의 사항** : 사업 신청 시 아래 유의사항 필독

유의사항

- 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이 필요
- ②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혹은 전문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內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하며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될 수 있음
-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협동조합에게 책임이 있음
- ④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유의
- ⑤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연도 포함 향후 2년간(~'26년) 사업 지원 불가
- ⑥ 同 사업 선정 시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 ⑦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신청,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조치 및 민·형사소송 가능

□ **의무 사항** : 사업 선정된 조합(협업체)은 아래 의무사항 이행 필요

의무사항

- ① 선정 통보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사업 담당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온·오프라인)을 1회 이상 참여해야 함.
- ② 박람회 참가하는 조합은 박람회 지각, 무단불참, 운영인력2명 이상주, 무단 조기종료 등 불성실한 참여태도를 지양해야 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해야 함.
- ③ '24년도에 지원받은 조합은 익년 실시되는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조합은 추후 공단 요청 시, 협동조합 현황정보 제공 의무 있음.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음

6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8

※ 제출서류

- (서식) 1. 2024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2024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 참여확약서

[참고 1]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고 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 3]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확인 기준

[참고 4] 전국 지역센터 및 관할구역 현황[2.7]

[참고 5] 제출서류(공동사업 / 판로지원)

[참고 6] 제출서류 발급처

[참고 7] NICE 원클릭서비스 이용방법

참고1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분야(가이드라인)

분 야	지원가능	지원제한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단순 레시피 개발 - 외부 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 디자인(상품, 포장)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디자인(상품, 포장)의 경우 시제품 1개 외 제작 비용 지원 불가 - 외부 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답례품성격의 물품제작 (예) 티슈, 화장지, 생수, 아이스팩 등 - 조합의 물품의 소지 또는 이동 시 편리·효용성을 주는 것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물품 또는 재료비 성격의 물품 제작 (예) 박스, 포장지, 쇼핑백, 비닐봉투 등 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시 일정량의 쇼핑백 제작은 가능 - 조합 또는 조합원 사업체에서 사무용 소모품 또는 비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물품 제작 (예) 다이어리, 볼펜·연필, 만년필, 우편봉투, 서류봉투, 청소용품, A4용지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단순 하드웨어는 지원 불가
규모화 사업	- 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조합 자체교육·인큐베이팅·연수 등 자체사업 - 조합의 자체진행 사업만 가능	- 간접비·인건비 지원 불가 - 계획서 제출 내용 외 사용 불가 - 외부 위탁 진행 불가
프랜차이즈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미비 시 지원취소
상권활성화	- 상권활성화 활동 등 조합 활동 - 외부위탁 및 자체활동 진행 가능	- 간접비·인건비 지원 불가 - 계획서 제출 내용 외 사용 불가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공동장비	- 품목별 구매단가 3백만원 이상 장비 - 협약기간(5년)간 보관·관리가 용이한 장비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 공동장비의 경우 협동조합(협업체) 명의(자가, 임대차, 전전세, 전대차 등)이고, 정부지원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가)	- 구매비용 3백만원 미만의 장비 - 모든 차량 (오토바이 등 포함) -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 공사비(설치비, 전기배선작업 등), 장비 운반비용(수수료, 탁송료 등) 기술이전료 등 부수적인 비용은 지원 불가 * 구축에 공사가 필요하거나 소요비용 중 공사비에 대한 분리가 곤란한 장비는 지원불가 * 단, 공동장비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공 재료비(전선, 배수관 등)는 지원 가능 - 사무용품, 집기류 등 소모성 자재,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단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전산장비(노트북, 컴퓨터 등) 등 범용장비는 지원 불가 - 중고제품은 지원이 불가 - 조합·조합원 생산·취급 장비 불가

참고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표준산업분류	업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확인 기준

1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2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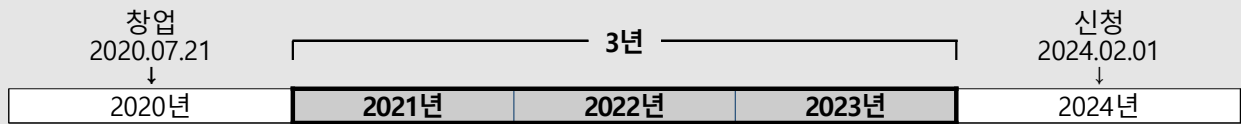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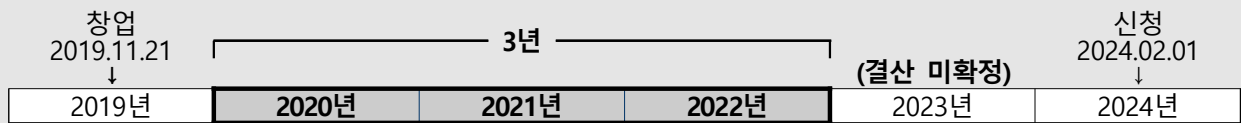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예시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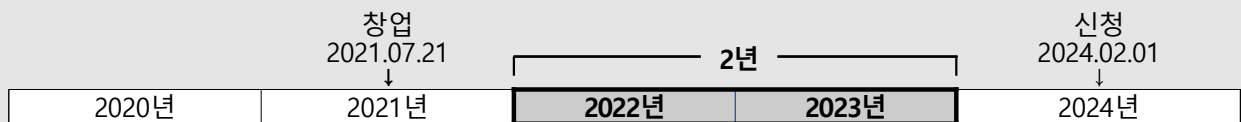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2021년~2023년 매출액 합계)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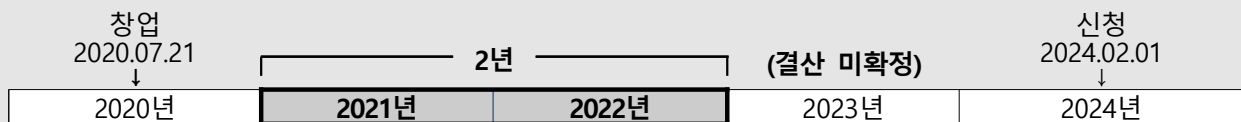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2020~2022년 매출액 합계) / 3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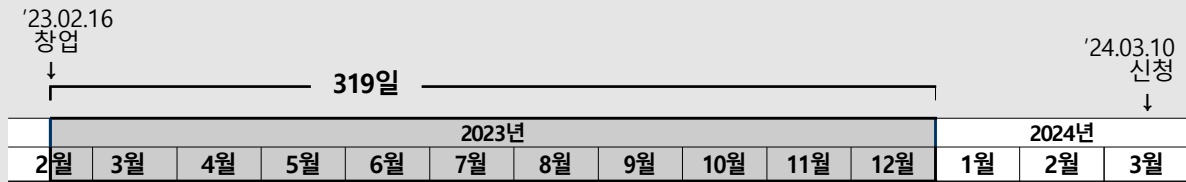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2022년~2023년 매출액 합계) / 2



☞ 평균매출액등 : (2021년~2022년 매출액 합계) / 2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23.02.16~'23.12.31 매출액(A) 연환산 (= (A/319일) × 36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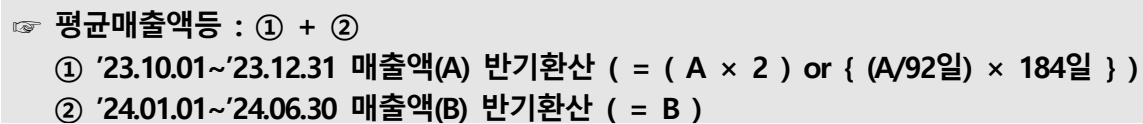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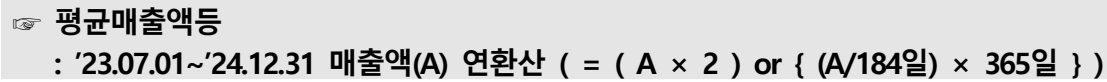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23.08.16~'23.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A/138일) × 184일)

② '24.01.01~'24.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B)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2024년 6월 2일 ~ 2024년 6월 10일 매출액 합계) / 9일) * 365**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례

2018년 창업한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2019년~2021년** 3년간 평균매출액은 110억원(음료제조업 분야에서 70억원, 도매업 분야에서 40억원)임. **2022년 6월에 지원신청한 A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는?

1 주된 업종 판단

70억원(음료제조업)과 40억원(도매업)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된 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된 업종

2 매출액 기준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A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에 적용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3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3년 평균매출액 110억원과 업종별 기준인 120억원을 비교

⇒ 규모기준을 충족

4 소기업 적용기간 확인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2021.12.31.)에서 3개월이 경과한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

⇒ 적용기간 충족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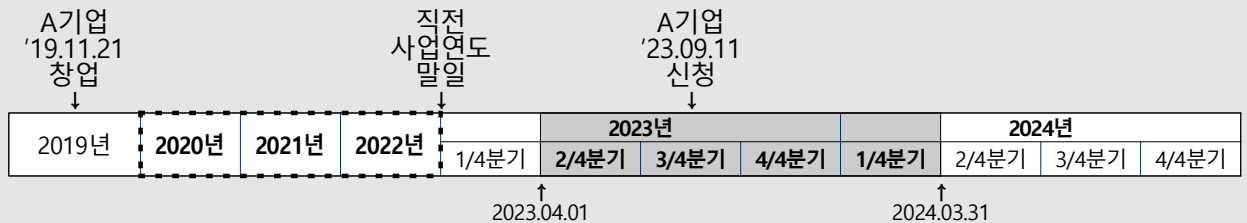
○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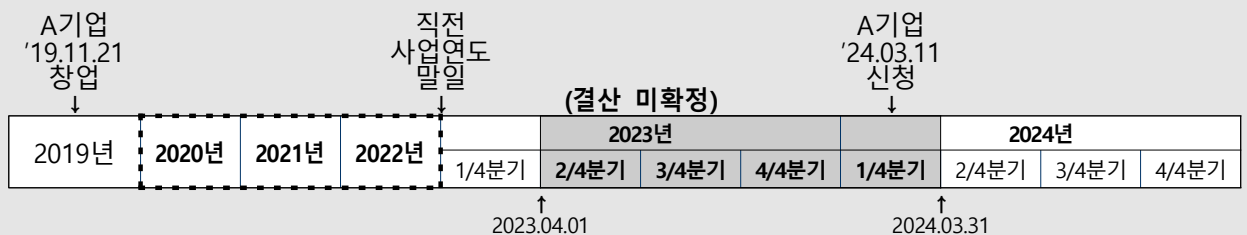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소기업 여부 적용기간 예시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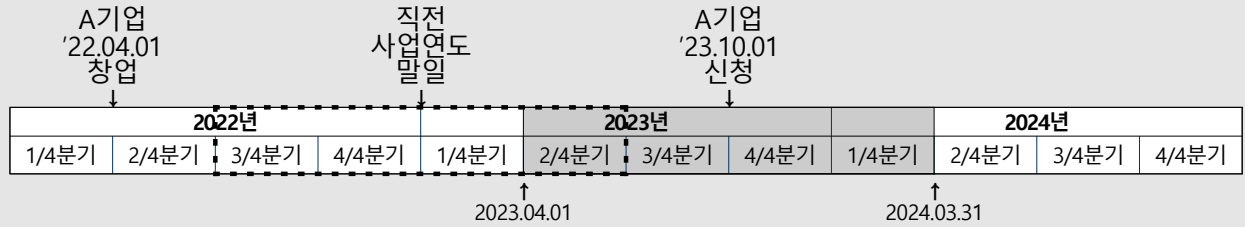


☞ A기업 2023년 09월 11일 신청 → A기업의 **3개년도(2020년~2022년)의 평균매출액 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3년 04월 01일부터 2024년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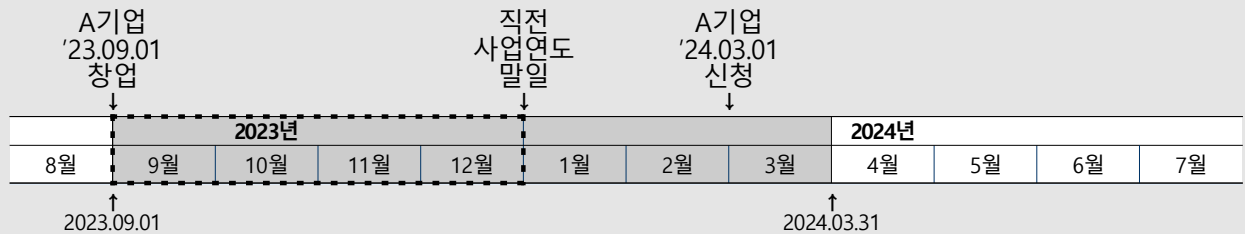


☞ A기업 2024년 03월 11일 신청 → (2023년 결산 미확정) → **3개년도(2020년~2022년)의평균 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3년 04월 0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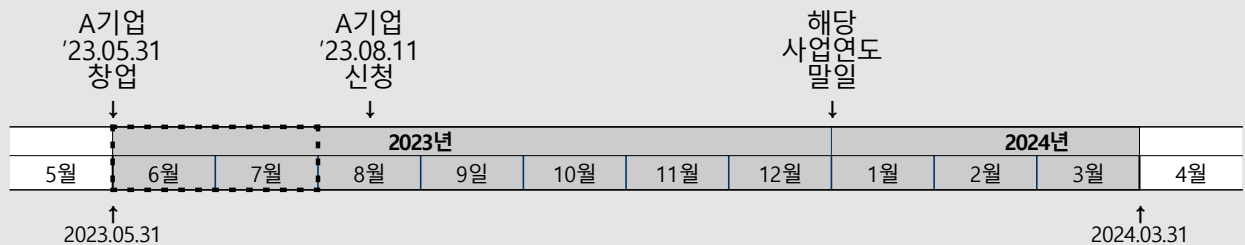


☞ A기업 2023년 10월 01일 신청 →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계산한 평균 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3년 04월0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 A기업 2024년 03월 01일 신청 → A기업 창업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환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까지(신청일이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경과하기 전이라면, 창업일부터 창업한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 A기업 2023년 08월 11일 신청 → A기업은 같은 해 2023년 05월 31일에 창업 → A기업의2023년 6월~7월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등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3년 05월 3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까지(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③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 전담 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㉓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3. 11. 20	'24. 1. 31	(직전 사업연도) '23년 1월~'23년 12월
예시2	'23. 2. 5		(최근 12개월) '23년 3월~'23년 12월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	-----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21.3.26 지원 신청할 경우, 2020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9년 11월 2일, 신청일: '21년 3월 제출기간: '20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20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20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20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4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제5조(확인신청)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참고4

전국 지역센터 및 관할구역 현황(2.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1357)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대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 강원도
(서울)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라이프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서울)관악센터	(02)889-9262 (02)889-927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동작센터	(02)3482-6683 (02)3482-6687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산업경제진흥원 3층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광역시 북구 기창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46SMC 빌딩 6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남구, 울주군
(울산)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052)243-7495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문해거리 28 2층	북구, 중구, 동구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 밀양시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 동구, 군위군
(대구)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 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7 영주공유플랫폼 3층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자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광역시, 전라도, 제주도
(광주)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자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 남구
(광주)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주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6 (064)739-92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30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남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031)337-18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2 (031)677-6188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안성시
(경기)이천센터	(031)631-7455 (031)631-7465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이천시, 여주시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032)822-2619 (032)822-26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713호	인천광역시, 경기북부
(인천)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부천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구리센터	(031)554-5361 (031)554-5370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경기)김포센터	(031)997-4302 (031)997-4305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	김포시
(경기)시흥센터	(031)311-2689 (031)311-2690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347 다운프라자 403호	시흥시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 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아산센터	(041)549-5392 (041)549-5399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	아산시, 예산군, 홍천군

참고5

제출서류

□ 공동사업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협동조합	연합회	협업체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신청화면 內 "자가진단" 체크)	협동조합	연합회	협업체
	(2) <서식1>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연합회	협업체
	(3) <서식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단, 협동조합 20개 이상 연합회 및 협업체는 회원조합 서류	조합원 전원	연합회 회원조합, 조합원 전원	협업체 회원조합, 조합원 전원
	(4) <서식6> 사업 참여 약약서	등기임원	연합회 등기임원	협업체 등기임원
	(5) <서식2> 공동사업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협동조합	연합회	협업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NICE 연계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 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연합회	협업체
사업자 등록증명 NICE 연계	- 소상공인이 아닌 조합원(자연인)의 경우 제출 제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연합회, 회원조합	협업체, 회원조합
소상공인 확인서류 NICE 연계	- (권장)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가능)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 기준 * 단, 협동조합 20개 이상 연합회 및 협업체는 회원조합 서류	조합원 전원	연합회 회원조합, 조합원 전원	연합회 회원조합, 조합원 전원
세금납부 확인 NICE 연계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 신규 설립으로 제출 불가 시 등기임원 전원 제출	협동조합, 이사장	연합회, 회장	협업체, 회장
조합원 명부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필수) 신청일 기준 조합원 명부 -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필수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 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협동 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협업체, 회원조합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협동조합	연합회	협업체
출자자 명부	- 성명, 생년월일, 출자좌수, 출자금액 필수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 단, 협동조합 20개 이상 연합회 및 협업체는 회원조합 서류	협동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협업체, 회원조합
협동조합 정관	- 각 정관 1조 조합 설립 기준 법령 확인 필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익배당내용 포함 필수	협동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협업체, 회원조합
이사회 의사록	- 최근 1년간 이사회 의사록 - 해당사업 참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 필수 포함	협동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협업체, 회원조합
매출증빙 서류 NICE 연계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필수) 2022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2) (필수) 2023년 매출 확인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협동조합	연합회	협업체
고용확인 서류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필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2) (필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23.1월~23.12월) 또는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23.1월~23.12월)	협동조합	연합회	협업체
교육실적 확인서류	- (해당 시) 최근 1년 간 협동조합 주관 교육운영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합 설립 이전 추진교육, 친목모임 등은 불인정	협동조합	연합회	협업체
기타서류	- 기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사회공헌(자원봉사 등) 활동, 지역사회 협업	협동조합	연합회	협업체

□ 판로지원(온오프라인)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화면 內 “자가진단” 체크)	협동조합
	(2) <서식3 또는 4>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3) <서식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조합원 전원
	(4) <서식6> 사업 참여 약약서	등기임원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NICE 연계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사업자 등록증명 NICE 연계	- 소상공인이 아닌 조합원(자연인)의 경우 제출 제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세금납부 확인 NICE 연계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이사장
소상공인 확인서류 NICE 연계	- (권장)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가능)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 기준	조합원 전원
조합원 명부	-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필수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 되어 있어 야함 -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협동조합
매출증빙 서류 NICE 연계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1) 표준재무제표증명 (2)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매출액) '23년도 매출 1천만원 이상 → 23년 매출 확인서류 (매출증가) '22년 대비 '23년 매출 5%이상 증가 → 22, 23년 매출 확인서류	협동조합
통신판매업 신고증 (선택)	- 상호명 및 대표자 정보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과 일치 - 온라인 판로지원 신청자만 제출	협동조합
기타서류	- 기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협동조합

참고6

제출서류 발급처

연번	서류명	발급처
1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온/오프라인] 법원등기소,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2	- 사업자등록증명	[온/오프라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3	- 소상공인 확인서	[온/오프라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mms.go.kr)
4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5	-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발급 신청서' 작성 → 신분증과 함께 팩스/방문 제출
6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온/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7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온/오프라인] 신청업체(세무대리인) 신고서 사본 (세무대리인 또는 신청인 날인)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8	- 표준재무제표증명	[온/오프라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9	-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10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1	- (국세)납세증명서	[온/오프라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12	- 지방세납세증명서	[온/오프라인]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위텍스(www.wetax.go.kr)
13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오프라인] 관할 시청, 구청 정 부 24 (www.gov.kr)

[“NICE원클릭서비스”]

* “NICE원클릭서비스”란?

⇒ 제출서류 중 일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류, 세금납부 확인서류, 매출증빙서류)를 고객의 pc에서 공단 사업시스템으로 비대면 일괄 발급 및 전송 서비스

1. NICE평가정보 원클릭서비스 이용(연계)방법

- 협업활성화 홈페이지 매뉴얼 참고

2. 제출서류 첨부 시 NICE 원클릭서비스 연계 관련 유의사항

(NICE원클릭서비스 연계 조합)

1. [기본정보]탭에서 협업체명, 조합구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NICE** 버튼 클릭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류, 세금납부 확인(국세, 지방세), 매출증빙서류가 연결되어 자동첨부 완료*
- * 단, NICE원클릭서비스에서 조합이 발급·제출한 서류에 한해서만 자동첨부
4. NICE 원클릭서비스 자동첨부 서류 외에 별도 첨부해야하는 나머지 서류(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출자자 명부 등)는 조합에서 직접 첨부
5. [사업비]탭에서 사업비 집행계획 입력
6. [조합원]탭에서 조합원 정보 입력
7. 다시 [기본정보]탭으로 이동 후 **NICE** 버튼 클릭

(NICE원클릭서비스 미연계 조합)

1. [기본정보]탭에서 협업체명, 조합구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NICE** 버튼 클릭하여 해당링크 이동 후 가입 후 이용 또는 **공고상의 제출서류** (공고문 4~6Page)를 확인하여 조합에서 직접 모든 서류 첨부
3. [사업비]탭에서 사업비 집행계획 입력
4. [조합원]탭에서 조합원 정보 입력
5. 다시 [기본정보]탭으로 이동 후 **NICE** 버튼 클릭

※ 단, 협업활성화 홈페이지에 기 등록되어 있는 조합 중 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탭에서 조합원 변경정보 입력 후, 다시 [기본정보]- **NICE** 버튼을 클릭 필수 (**NICE** 버튼을 재클릭해야만 변경된 조합원 정보로 입력 가능)